

## 수익증권저축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( )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( )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----- 변경 내용을(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을 -----</p> <p>② -----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----- 개별 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-----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약관변경시 공시·통지 의무 확대</p>